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이유서

의안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2. 8. .

제 출 자 :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

1. 개 정 이 유

○ 우리구의 행정동중 과대동인 하단동, 신평동, 다대동의 분동에 따른 당해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

2. 주 요 골 자

○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(소재지) "별표" 기관명중 하단동, 신평동, 다대동을 각각 하단 제1동・하단 제2동, 신평 제1동・신평 제2동, 다대 제1동・다대 제2동으로 개정하는등 기관명 및 소재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

3. 관 계 법 령

○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